

##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공고

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등을 위반한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,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3년 6월 13일  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### 1. 대상자

| 당사자(건설기술자) |            |     | 경력(자격)종목 | 처분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분의 원인사실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성명         | 생년월일       | 주소지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권 창수       | '65.12.23. | 인천  | 기중기      | 자격정지 2개월<br>( '23.7.1. ~ '23.8.31.) | 성실의무 위반  |

### 2. 법적근거

-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[별표 18] 등

### 3. 유의사항

-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(송달일)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#### 4. 기타방법

- 위 공고문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(02-2110-6728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